대학입학전형 자체평가위원회

일시: 2023. 3. 29.(수) 14:00

장소 : 인성관 109호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2023. 3. 29.

백석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3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5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절차에 대한 대학의 자체규정 ······	5
2.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과 기능	5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계획	5
4.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6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7
1. 출제과정	7
2.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7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7
1. 대학별 고사 대상자 최종 선발 인원	7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7
3. 문항분석 결과 요약표	8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8
1.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8
2.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일정	. 8
부록.	
1. 백석대학교 관련규정	9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인·적성 면접문제 (사전공개 문항)

1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본인은 그 가치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2	본인이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입니까?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지 말해 보십시오. 만약 봉사활동 경험이 없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며,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3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친한 친구와 실력은 좋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 중에서 누구와 팀을 구성하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본인과 다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에서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해 보십시오. 만약 1만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5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본인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6	부모와 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부모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7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지원전공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 보십시오.
8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런 자기표현을 지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9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 과목이 지원전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본인이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원전공은 둘 중 어떤 항목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인·적성 면접문제 (사전공개 문항)

11	지원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입학 후 전공적성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12	지원전공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만약 복수전공을 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13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망한 직업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지원전공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14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15	대체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체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16	두 가지의 '하고 싶은 일' 중에서 하나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17	팀 과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팀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 해결 과정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비대면 수업에서 경험한 어려운 점을 말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은 어떤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까?
19	외국인들이 케이팝(K-Pop)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심과 열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지금까지 가장 크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청년의 실패에 좀 더 관대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Ⅱ.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절차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부록 1 참고)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4절 27조 '본교에서 시행하는 면접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를 근거로 자체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마련 및 위원회를 운영

2.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과 기능

가. 위원회 조직

내부위원은 6명 이내, 외부위원은 2명(천안지역 고교 3학년 교사) 이내로 구성 나.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대학별 고사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 선행학습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2023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구분	위촉기간
위원장	백석대학교	학사부총장	정우진	당연직	
	"	교무처장	임미림	당연직	
	"	입학관리처장	곽노윤	당연직	
내부위원	"	사범학부장	김정현	추천	
	"	사회복지학부장	김 욱	추천	23. 3. 01. ~ 24. 2. 29.
	"	입학관리처팀장	김성수	당연직	
외부위원	온양한올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	이성구	추천	
의구귀권 	천안신당고등학교	진로 부장교사	성하연	추천	
간사	입학관리처	팀원	이원직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운영일자	내용	비고
2022.3.10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 위촉	내부 6명, 외부 2명 구성
2022.3.22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 개최	2022학년도 평가 및
		2023학년도 운영계획 수립
2022.4.8. ~ 4.22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문제 출제	 48개 문제 출제
2022.4.0. 4.22	- 입학관리처에서 모집단위별 교원 8명 위촉	40개 문제 물제
2022.4.29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출제 문제 선정 및	20개 문제 선정
2022.4.29	자체 감수 - 입학관리처 위촉 교원 8명	20개 문제 신경
0000 5 04 5 01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문제 외부 전문가	천안·아산지역 고교
2022.5.24 ~ 5.31	감수 - 백석대학교 교사자문단	부장교사 3명
2022. 6월	■ 감수 완료된 면접고사 문제 입시홈페이지 탑재	

4.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판단기준		
구분	항목	이행 점검 여부 (○·×)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공개 (문항 공개의 충실성)	0	
대학별 고사시행 관련	2. 선행학습영향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0	
	평가보고서 항목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0	
이행사항 점검	준수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0	
	3. 선행학습 영향평가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0	
	위원회 구성	⑥ 현직 고교교사 포함 여부	0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보고 공개 자료: 백석대학교 입시홈페이지>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출제과정

- 내부 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48개의 면접문제를 출제 후, 이를 검토하고 20개 문제를 선정 및 자체 감수를 시행함

2.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 백석대학교 교사자문단(천안·아산지역고교 3학년 부장교사, 진로진학 부장교사)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중 3명을 선정하여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예상문제에 대한 감수 및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면접고사 예상문제를 완성함

Ⅳ. 문항분석 결과 요약

1. 대학별 고사 대상자 최종 선발 인원

대학별 고사유형	운영 여부	선발 인원	영향평가 대상 여부		해당전형
면접고사	0	722	0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백석인재, 체육특기자 지역인재1(항공서비스), 특성화고교(항공서비스), 농어촌학생(항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항공서비스), 서해5도민(항공서비스)
				정시모집	일반전형(항공서비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입학						계열	및	교과				
				모집요강에	문항	하위	인	문사	회			과	학			교과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번호	문항 번호	국어	사회	도덕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기 타	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당모집 계열	없음	1-20											0
		백석인재	해당모집 계열	없음	1-20											0
O. T.		체육특기자	해당모집 계열	없음	1-20											0
면접		지역인재1	항공세비스	없음	1-20											0
고사		특성화고교	항공세비스	없음	1-20											0
		농어촌학생	항공세비스	없음	1-20											0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항공서비스	없음	1-20											0
		서해5도민	항공세비스	없음	1-20											0
	정시	일반전형	항공세비스	없음	1-20											0

[※] 예능계열은 공교육정상화법 16조 3항에 의거하여 적용하지 않음.

3.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 과정 준수 여부	문 분 번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당모집계열			해당 없음				
	백석인재	해당모집계열			해당 없음				
	체육특기자	해당모집계열			해당 없음				
	지역인재1	항공세니스			해당 없음				
면접고사	특성화고교	항공세시스	해당 없음						
	농어촌학생	스비사S성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항공세비스			해당 없음				
	서해5도민	항공세시스	해당 없음						
	정시 일반전형	항공세시스	해당 없음						

[※] 백석대학교 면접고사 문항은 인·적성 문제로 "해당 없음"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는 인성 및 전공적합성을 묻는 면접으로서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지만 고교 교육전문가의 자문, 고교 교육과정 정보 축적을 위하여 지속적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 할 예정임

2.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일정

운영일자	내용	비고
2023.3.29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 회의 개최 및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2023.3.31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회의 결과 입시홈페이지 공개	
2023.4.6 ~ 4.17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문제 출제 - 입학관리처에서 모집단위별 교원 8명 위촉	
2023.4.24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출제 문제 선정 및 감수 - 입학관리처 위촉 교원 8명	20문제 선정
2023.5.1 ~ 5.12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면접고사 문제 외부 감수	천안·아산지역 고교 부장교사 3명
2023. 6월	• 감수 완료된 면접고사 문제 입시홈페이지 탑재	

[부록 1]

BU	입학전형
밴선대한교	H 범위선생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1.08.05
개정일	-
주관부서	입학관리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실시하는 면접·실기 고사를 말한다.
- 2.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잠재력, 소질,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전임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과 비전임 입학사정관(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 3. '교수사정관'이라 함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위한 교육, 평가 및 운영 등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교원을 말한다.
- 4. '채용사정관'이라 함은 입학관리처 소속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로서 평가 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전환사정관'이라 함은 입학관리처 소속으로 발령 받아 입학사정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자로서 입학전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 '위촉사정관'이라 함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에 관한 업무를 전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 '회피'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를 가진 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 8. '배제'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다.
- 9. '선행학습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본교에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제2장 입학사정관

제3조(자격)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교수사정관: 본교 소속의 교원
- 2. 채용사정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입시(교육)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만, 필요 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할 수 있다.
- 3. 전환사정관: 본교 입학관리처에 발령되어 근무 중인 직원
- 4. 위촉사정관: 본교 소속의 교직원 혹은 교내・외 교육관련 경력자

- 제4조(임명) 입학사정관의 임용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수사정관: 본교 소속의 교원 중에서 입학관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2. 채용사정관: 채용사정관의 신규임용은 직원인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 3. 전환사정관: 입학관리처장의 요청과 인사관리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4. 위촉사정관: 입학관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5조(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입학사정관의 업무) ①전임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학생 선발 업무
 - 2. 전형결과 분석 및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개발업무
 - 3. 학생부종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 4. 입학전형 안내 및 상담업무
 - 6. 그 밖에 신·편입생 선발에 관련된 업무
 - ②위촉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업무
 - 2. 서류평가를 위한 교육 참여
- 제7조(복무 및 교육훈련) ①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공정한 전형 업무수행, 청렴유지 등 본교의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학사정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훈련 등 각종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 제8조(입학부정방지대책) 입학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시관련 참여자가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며,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입학사정관은 별표1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입시업무 관련 참여자 또한 별표2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규정 등) 전임 입학사정관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등을 따른다.

제3장 회피 및 배제

- 제10조(대상) ①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 대상 적용 범위는 전형자료 심사, 서류평가, 대학별고사 출제, 면 접평가, 실기평가, 진행, 감독,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본교 전임교원, 직원, 조교 및 기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 ②회피 및 배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피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민법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이거나, 본교 지원 수험생을 최근 3년 이내에 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등)에서 교육했거나 학원교습 또는 과외교습을 한 경우이거나,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다.
 - 2. 배제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로 한다.

- 제11조(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①입학관리처장은 회피대상자가 전형 시작 전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본교 구성원에게 공문을 통해 안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 ②회피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 별표3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배제 대상자 확인) 입학관리처장은 원서접수 이후 수험생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검증을 통해 배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회피 자진 신고자와 대조하여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를 재검증한다.
- 제13조(대상자 처리) ①입학관리처장은 회피 신고 및 재제 대상자자가 해당 수험생의 선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②입학관리처장은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③입학관리처장은 최종 합격자의 정보(인사자료, 장학사항 등)를 바탕으로 해당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와 비교하여 사후 검증한다.
- 제14조(위반자 조치) 입학관리처장은 사후검증 결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해당 응시 수험생의 합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또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 인사위원회에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입학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한다.

제4장 위원회

제1절 기구 및 회의

- 제15조(기구) 대학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2.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 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 4.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 제1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①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②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회의 내용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8조(회의록 작성) ①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담당부서) 동 규정 제15조제2호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감사실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각 호는 입학관리처에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절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제20조(설치) 본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대학의 입학전형에 전문성이 있는 전임교원 및 팀장 이상의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의 직원으로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의 성격상 위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2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2. 대학입학 전형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3. 대학입학 기준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4.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 등 입학관리처에서 요청한 사항
 - 5.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주요사항
- 제23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신·편입학 선발과 순수외국인 선발에 관한 위원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처와 국제교류처 교직원으로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소집통지, 회의장소 준비,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제3절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 제25조(설치) 본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 **제26조(관련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 제27조(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면접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총장이임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

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내,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입학관리처장, 교무처장,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외부위원의 경우는 재위촉 한다.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2.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대학별고사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
-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
- 제30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결과의 공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입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절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 제32조(설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처 내에 학생부종합전형운 영위원회를 둔다.
- 제33조(구성) ①위원회는 입학관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사정관 및 입학관리팀장으로 위원을 구성 하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유사도 검증에 관한 사항
- 3. 기재금지, 유사도 등 검증 이후 처분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장 이의신청

- 제35조(이의신청)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별표4의 서식으로 서면을 통하여 이의 신청할수 있다.
- 제36조(처리방법 및 절차) 지원자가 동 규정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①이의신청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입학관리처 전형 담당자 등이 전형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처리 완료한다. 이 경우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어 녹취 후 녹취록을 보관한다.
 - ②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입학관리처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자가 공식적인 문서

로 받기를 원하면 입학관리처는 문서로 답변한다.

- ③이의신청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지원자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입학사정자료 조회 및 전형에 참여한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④입학관리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후속 조치를 수행하다.
- 제37조(결과통보 등) ①입학관리처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원자가 본교의 다른 전형 혹은 차후 입학전형에 지원할 경우 이의신청 제기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지원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②입학관리처는 「문서의 보관·보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내용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접수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10년 보관한다.

제6장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

-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학칙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따른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개입하여 공정한 학생선발업 무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②전항의 사항이 입학 허가 후에 발견된 때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39조(처리 절차) ①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입학관리처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보칙

- 제40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본교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 제4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과 「입학전형 교직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_	15	_
---	----	---